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17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위상・이달희・임이자

김선교 · 김승수 · 박성민

이인선 • 구자근 • 서범수

박정하・송석준・박충권

김용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 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 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 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 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 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 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를 "설정하려"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변경된"을 "제4항에 따라 변경된"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담보"를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담보"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금"을 각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제4항"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제4항"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9조제6호"로"를 ""제19조제1항제6호"로"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제4항"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퇴직급여제도의"를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제 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를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명"을 "30명"으로,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다만, 지원대상, 지원 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 3.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제38조의 제목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를 "(퇴직급여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을 "사용자가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제도를 폐지하려는"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제4조제3항·제4항"을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퇴직금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던 사업(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2조제6호,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이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1.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 행일 이후 2년
 -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 4.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5년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기간을 변경 전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일시금"으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일시금"으로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한다.

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일시금"으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일시금"으로 한다.

⑧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	6
형퇴직연금제도, <u>확정기여형</u>	<u>확정기여형퇴</u>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	연금기금제도
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u>설</u>	③ <u>설</u>
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	<u>정하려</u>
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u>변경하려</u>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	
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의 <u>동의를 받아야 한다</u> .	<u>의견을 들어야 한다</u> .
<u> <신 설></u>	④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
	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
	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 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 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 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 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 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략)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5</u>
<u>제4항에 따라 변경된</u>
<u><삭 제></u>

/// // / 日 し	1 8 9
같음)	
②	

퇴직연금사업자[중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 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에 게 담보--- 있으며, 이 경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 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 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삭 제>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 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삭 제>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① 제4조제1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근로 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 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신 설>

<신 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부담금 중미납입부담금에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등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 및미납입부담금

	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

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 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 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 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퇴직급여등 중 <u>퇴직금</u>, 제15 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지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 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 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1조제1항에</u>
<u> 따른 일시금</u>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u>제4조제4항</u>
의견을 듣거나 동의
를 얻어
1.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입기간) ① (생 략)	제14조(가입기간) ① (현행과 같
	승)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	
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	
로 할 수 있다. <u>이 경우 제8조제</u>	<u><후단 삭제></u>
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	의 설정) ①
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u>제5조</u> 에 따라	<u>제4조제4항</u>
근로자대표의 <u>동의를 얻거나 의</u>	<u>의견을 듣거나 동</u>
<u>견을 들어</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를 얻어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	
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	2
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	
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 ·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

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로 본다.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의 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1. <u>퇴직급여제도의</u> 일시금을 수 령한 사람

2. · 3. (생략)

<u>"제19조제1항제6호"로</u>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u>제</u> 4조제4항
<u>의견을 듣거나 동</u>
의를 얻어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
<u>아</u>)
②
 1 시 비시 미르 그서 ㅠ느 케11
1. <u>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제11</u>
<u>조제1항에 따른</u>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 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 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u>(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u>
<u>업에 대한 특례)</u> ① <u>30명</u> -
<u>제4조제1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다.

1. ~ 4. (생 략)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u>설></u>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 제38조(퇴직급여제도의 폐지·중 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 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 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 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 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 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 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

1. ~ 4. (현행과 같음)

----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다만,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 3.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 활성 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② ~ ④ (현행과 같음)

단 시의 처리) <삭 제>

① 사용자가 폐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제도 를 폐지하려는 -----

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4 제>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 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 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조(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

 	 	 	 	 	_	

② (현행 제3항과 같음)<삭 제>

<삭 제>

세44소(벌식)	
.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4. (생 략)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 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 3. (생 략) 제48조(과태료) <신 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 시금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1. <u>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u> -
1의2. ~ 3.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underline{2} \cdot \underline{3}$ (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